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11. 1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11. 12

다. 상정일자 : 제13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8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1998년부터 조성된 동 기금의 조성액이 361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명을 “동두천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함.

○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정함.

○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정함.

○ 사업비 지원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정함.

○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회수에 대하여 정함.

○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하여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동두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고 기금의 조성과 용도, 기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기능, 사업비 지원과 지원대상자 선정, 융자금의 상환유예 및 회수, 기타 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및 감독에 대하여 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

○ (김택기 의원)

본 안건은 1998년부터 조성된 동 기금의 조성액이 3억 6천 1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아직까지 농업인에게 지원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나,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시점의 재원으로는 기금조성액 규모와 저금리 정착으로 농업인들이 원하는 만큼 융자·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그동안 각종 농업정책의 혼선과 불합리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부채가 누적되어 있고, 본 조례안대로 시행시 융자금 상환에 따른 또다른 부채의 증가가 우려되는 등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향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어려움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보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의장)

김택기 의원의 보류동의 취지설명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향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지고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회기에서는 의원님들의 동의하에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보류하고자 함.

6. 심 사 결 과

“ 계 류 ”